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65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김원이 · 변재일 · 안민석

안규백 • 박홍근 • 한정애

홍익표 · 강훈식 · 김성주

박 정・신정훈・위성곤

강민정 · 김경만 · 박성준

박영순 • 서영석 • 윤재갑

이상헌 • 이수진॥ • 이용우

이은주 · 장철민 · 조오섭

최혜영·한준호·허 영

홍성국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이 지연되었음. 지속된 질병의 유행으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형태로 개학을 실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학생들의 교실수업을 진행함.

교육부에서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교실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또한 코로나19 외의 자연재해 및 보건관련 응급상황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시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음. 따라서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업일수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상 근거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함(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원격수업의 인정에 관한 특례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연재해 및 보건 관련 응급상황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24조의2(원격수업의 인정에 관 |
| | 한 특례 등) ① 학교의 장은 |
| | 자연재해 및 보건 관련 응급상 |
| | 황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 |
| | 려운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
| | 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
| | 인정할 수 있다. |
| | ②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 |
| | 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 |
| | 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
| |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